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11. 22 선고 2024가단3608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4. 9. 27.

판 결 선 고 2024. 11. 22.

주 문

1. 피고와 D(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2023. 9. 22.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의 162분의 18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과 2023. 6. 26. 별지 목록 기재 제4항 기재 토지 중 162분의 18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의 162분의 18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23. 9. 26. 접수 제98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의 162분의 18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23. 6. 29. 접수 제66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문 제1항 기재 각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하고, 그 목적물을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 한다)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주문 제2항 기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D이 2017. 7. 10. 이 사건 공유지분을 창원지방법원 E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다음 F대학교 교수인 제3자에게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162분의 18 지분 공유자이던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처리하였을 뿐이고, 피고는 D과 일면식도 없었으므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등 참조).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63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률상 악의 추정을 반복하고,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효인

별지